

## 보 고 안 건

연번	유형	안 건 명	제안부서
1	예산전용	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-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예산전용 보고	생 활 보건과
2	예산전용	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예산전용 보고	생 활 보건과
3	예산전용	동물복지지원센터 예산전용 보고	동 물 보호과

## 시 민 건 강 국

# 1.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-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예산전용 보고

## □ 사업근거

-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16조

## 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'18. 1월 ~ 연중 실시
- 대 상 : 송파구 등 13개 자치구
- 내 용 : 생물테러감염병 의심사례(백색가루) 발생 시 보건소 초동대응 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모의훈련
  - 매칭비율 : 국비 50%, 시비 50%
- 예산액 : 총 46,000천원(국비 23,000천원, 시비 23,000천원)

## □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

- 2017년도 사업량인, 12개 자치구 기준으로 가내시 : 21,500천원  
[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-1975(2017.10.10.)]
- 13개 자치구 기준으로 확정내시 변경 및 보조금 교부 : 23,000천원  
[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-2541(2017.12.14.), 513(2018.03.21.)]
- 국비1,500천원 증액('18.4 간주완료)으로 매칭되는 시비 1,500천원 증액 필요

예산과목				예산액 (단위 : 천원)	변경 요구액		변경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생활보건 관리향상	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	MERS,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	재료비	(×0) 537,000	-	1,500	(×0) 535,500
		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-생물테러초동대 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	자치단체 경상보조금	(×23,000) 44,500	1,500	-	(×23,000) 46,000

## 2.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예산전용 보고

### □ 사업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감염병 표본감시 등)

### 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자치구 및 의료기관(330개소)
- 내 용
  -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보고 관리
  -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감시체계 운영
- 예산액 : 총 141,68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표본감시기관 운영비	예산액	비 고
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	127,680천원	표본감시 기관 262개소* 운영비 지원
자치구 운영비	14,000천원	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

※ 공공병원(서울의료원, 서울적십자병원, 국립중앙의료원) 및 보건소는 운영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관으로, 운영비가 지원되는 표본감시 기관수는 262개소 (cf.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330개소)

### □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

-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는 ①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② 자치구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
- 가내시 통보 이후 '18년 ① 서울시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기관 수 변동 및 ② 자치구 운영비 증액에 따라 확정내시 변동
  - 표본감시 기관 270개소에서 '18년 표본감시 기관이 262개소로 감소하면서 ① 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1,440천원 감액(65,280천원→63,840원)
  - 다만, 표본감시기관 회의·교육 등 강화 권고(중앙정부-질병관리본부)에 따라 ② 자치구 운영비 2,000천원 증액(5,000천원→7,000천원)되어 확정내시 통보
  - 따라서,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예산이 총 560천원 증액
- 국비 560천원 증액으로 매칭되는 시비 560천원 확보 필요하여 예산 전용을 실시함

예산과목				예산액	변경 요구액		변경후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(단위 : 천원)	증	감	예산액
생활보건 관리 향상	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	MERS,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	재료비	(×0) 537,000	-	560	(×0) 536,440
		주요감염병 표본감시	자치단체 경상보조금	(×70,280) 140,560	560	-	(×70,840) 141,680

### 3. 동물복지지원센터 예산전용 보고

#### □ 추진근거

- 동물보호법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

#### □ 추진경과

- 舊만탄치안센터 활용부서 선정('17. 11. 14)
- 舊만탄치안센터 재산관리관 변경('18. 2. 7)
- 동물보호교육시설의 교육기기 등 구입을 위한 예산전용('18. 2. 10.)
- 동물보호교육시설 명칭 선정 엠보팅('18. 3월) :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선정
-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도색 등 보수공사('18. 3~4월)
-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개장('18. 4. 7.) : 시민단체장, 시민 등 117명 참석  
- 반려견 행동교정 시범교육 : 총 113명 참여(46마리 반려견 동반)
-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반려견 행동교정 등 정기강좌 운영('18. 7~12월)

#### □ 전용사유

-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 시 교육기기 및 집기 등 구입을 위한 재원이 필요,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를 전용  
- 전용예산 : 40,000천원 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	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	동물복지 지원센터 운영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296,720		40,000	256,720
			자산취득비 (405)	자산 및 물품 취득비 (01)	50,000	40,000		90,000

-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와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분할, 교육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  
-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: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,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교육 등  
-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: 유기동물 입양 전·후 교육, 봉사자 견학프로그램 등